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28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과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식목일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날짜 변경	3

I.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 20.

다. 회 부 일 :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월 5일인 식목일을 나무 생육이 적합한 시기인 3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목일은 국무총리 훈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4월 5일로 지정하였으나, 관련법이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됩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6.5도라고 분석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은 계속 높아져, 3월 중순에 이미 6.5도 이상을 기록합니다. 지금 식목일보다 20일 이상 빠릅니다. 변화한 기후여건을 고려한 식목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등 사회 전반에 나무의 중요성을 되

새겨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무심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식목일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날짜 변경

개정안은 식목일을 매년 3월 20일로 지정하고, 식목일이 있는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목주간에 식목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0조의3(식목일 지정) ① 대기 및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며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식목일로 하고,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목주간에 식목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현재 식목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4월 5일로 지정되어 있으나,¹⁾ 변화된 기후여건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을 고려하여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고,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 강화를 위해 식목일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식목일은 1948년부터 4월 5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기념일의 명칭과 날짜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음.²⁾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1970년대 이후 3월 평균기온은 10년마다 약 0.5℃씩 상승하고 있으며, 수목식재에 적합한 시기는 뿌리 생장이 시작되고 잎눈이 트기 전(뿌리 활착이 잘 되는 시기)이므로 전국적으로 볼 때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가 평균적인 적정기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변화한 기후여건을 고려하여 식목일을 나무 생육이 적합한 시기인 3월 20일로 변경함으로써 식목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식목일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각종 기념일의 지정 방식으로 기념일의 중요성 및 입법 목적 등을 감안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9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 군정청 관보, 조선과도정부 관보(법률 제10호, 1948.3.31.)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함”

3) 뿌리 생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약 6℃이며, 강원 일부 지역 및 고지대 북사면 등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3월에 뿌리 생장을 위한 토양 상태 준비가 완료됨.

여 개별 법률에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또한, 개정안은 식목일이 있는 주간을 식목일에 관한 기념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 및 관련 사업 등을 통해 나무심기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식목일 날짜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념 날짜 변경의 필요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유관단체 의견수렴 포함),⁵⁾ 실제 조림 현황⁶⁾ 등을 고려하여 기념일로서 식목일은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개별 법률에 ‘식목일’에 대한 기념일 지정을 규정하는

4) 2025년 3월 기준, 57개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145개 기념일(10개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중복 규정)은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있음.

5)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식목일 날짜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산림청은 '13년과 '21년 식목일 날짜변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추진('21년은 국민인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기를 달리하여 2차례 조사)하였는데, 찬성의견이 '13년 64%에서 '21년 1차 56%, '21년 2차 57%로 감소하였고, 전국 16개 산림 관련 주요 협회·단체의 구성원 의견조회 결과('21.12월, 응답 671명), 식목일 유지 53%, 변경 34.6%, 기타(지역별 식목주간 운영 등) 12.4%의 의견으로 나타났음.

* ('13년) 전자설문 및 서면설문을 통해 조사, 2,802명 참여(일반국민, 산림공무원)

** ('21년) 전문 조사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조사 2,010명 참여(1차 1,006명, 2차 1,004명)

*** 전국 16개 산림 관련 주요 협회·단체: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목재보존협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한국수목보호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산림문화회, 한국목재공학회

6) 최근 10년('15~'24년)간 식목일(4.5.)까지 심은 조림면적은 68,090ha로, 최근 10년간 조림면적 218,366ha 대비 31.2%를 차지하였고, 반대로, 식목일(4.5.) 이후 조림면적은 전체면적 대비 68.8%를 차지함.

【 최근 10년간 전국 식목일 전 조림현황 (단위: ha) 】

것은 주관부처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기존 법정기념일 중 기념일 날짜가 변경된 사례로는 예비군의 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법의 날, 근로자의 날, 철도의 날, 무역의 날, 소상공인의 날 등이 있으며, 이는 법률의 변경, 역사적 근거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⁷⁾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식목일 날짜를 현실 상황에 더 적합한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조림면적	218,366	23,178	23,917	23,674	23,089	23,413	23,171	20,599	19,168	21,113	17,044
~4.5. 실적	68,090	7,443	7,625	6,205	6,026	8,024	8,851	7,195	6,226	5,868	4,627
비율	31.2%	32.1%	31.9%	26.2%	26.1%	34.3%	38.2%	34.9%	32.5%	27.8%	27.1%

【 우리나라 기후대별 나무 심는 시기 】

기후대	지역	춘기(약 40일)	추기(약 30일)
온대북부	경기, 강원	3월 하순~4월 하순	9월 하순~10월 중순
온대중부	전북, 경북, 충청	3월 중순~4월 중순	10월 상순~10월 하순
온대남부	전남, 경남	3월 상순~4월 상순	10월 중순~11월 상순
난대지역	제주, 남부해안	2월 하순~3월 하순	10월 하순~11월 중순

자료 :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7) 【 기념일 날짜 변경 사례 】

기념일	날짜변경	변경시기	변경사유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토요일 → 금요일	200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바뀌면서 변경(1968년 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4.13 → 4.11	2019년	학계 의견에 따라 임정이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구성한 날로 변경(1989년 제정)
법의 날	5.1 → 4.25	2003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로 변경(1964년 제정)
근로자의 날	3.10 → 5.1	1994년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1964년 제정)
철도의 날	9.18 → 6.28	2018년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변경(1964년 제정)
무역의 날	11.30 → 12.5	2012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여 변경(1964년 제정)
소상공인의 날	2.26 → 11.5	2017년	행사의 파급력 향상을 위해 변경(2015년 제정)

자료 : 산림청

날짜로 변경하여 기념일의 실효성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려는 입법취지, 식목일의 수요자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산림청의 현행유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참고1

기념일 현황 (개별법률 : 145개)

2025. 3월 기준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	해양안전의날	매월 1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2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한국수어의 날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4	한국수어 주간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5	문화유산 방재의날	2.10.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6	희귀질환 극복의 날	2월의 마지막날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7	국립공원의 날	3. 3.	환경부	자연공원법
8	여성의 날	3. 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9	흙의 날	3.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10	의용소방대의 날	3.19.	소방청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암 예방의 날	3.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12	결핵 예방의 날	3.24.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13	수산인의날	4. 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14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5	전기의 날	4.1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16	편의증진의 날	4.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17	도시농업의 날	4.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법
18	도서관의 날	4.1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19	도서관 주간	4.12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20	국민안전의 날	4.16.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1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2	장애인 주간	4.20.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3	자전거의 날	4.22.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4	새마을의 날	4.22.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5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4.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	4.28.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27	스포츠 주간	4월 마지막 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28	청소년의 달	5월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29	가정의 달	5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30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1	씨름의 날	음력 5.5.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32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3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34	유권자의 날	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5	유권자 주간	5.10.부터 1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6	바다식목일	5.10.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37	한부모가족의 날	5.10.	여성가족부	한부모지원법
38	양잠인의 날	5.10.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입양의 날	5.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0	입양주간	5.11.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1	식품안전주간	5.7.~5.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2	식품안전의 날	5.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3	가정의 날	5.1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44	발명의 날	5.19.	특허청	발명진흥법
45	세계인의 날	5.20.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6	세계인주간	5.20.부터 1주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7	문화다양성의 날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8	문화다양성 주간	5.21.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9	방재의 날	5.25.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0	실종아동의 날	5.25.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	실종아동주간	5.25.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2	중소기업주간	5월 셋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53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54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5.25.~5.3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5	해외파병용사의 날	5.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6	환경교육주간	환경의 날(6.5)이 포함된 1주간	환경부	환경교육법
57	국악의 날	6. 5.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58	구강보건의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59	기록의 날	6. 9.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법
60	헌혈자의 날	6.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61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62	해양조사의날	6.21.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63	선원의 날	6월 셋째 주 금요일	해양수산부	선원법
64	전자정부의 날	6.2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65	마약퇴치의 날	6.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66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6.28.	통일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7	사회적기업의 날	7.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8	사회적기업 주간	7.1.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9	협동조합의날	7월 첫째 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70	협동조합 주간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71	여성기업주간	7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72	도농교류의 날	7. 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3	방위산업의 날	7. 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	인구의날	7.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5	연안안전의 날	7.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6	연안안전점검 주간	7월 셋째 주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7	유엔(UN)군 참전의 날	7.27.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78	섬의 날	8. 8.	행정안전부	섬 발전 촉진법
79	이산가족의 날	추석 전전날 (음력 8월 13일)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80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8.14.	여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81	양성평등주간	9.1.~9.7.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2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간 (9.1.~9.7.)중 하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3	통계의 날	9. 1.	통계청	통계법
84	여권통문의 날	9.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5	태권도의 날	9. 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86	지식재산의 날	9.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기본법
87	고향사랑의 날	9. 4.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88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89	사회복지주간	9.7.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90	곤충의 날	9.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법
91	생명나눔 주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92	숙련기술인의 날	9.9.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93	자살예방의 날	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4	자살예방 주간	9.10.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5	해양경찰의 날	9.1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96	산업단지의 날	9.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7	성매매 추방주간	9.19.~9.25.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98	연안정화의 날	9월 셋째 토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99	청년의 날	9월 셋째 토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00	청년주간	청년의날부터 1주간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01	치매극복의 날	9.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102	조달의 날	9.30.	조달청	조달사업법
103	개인정보보호의 날	9.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104	군인가족의 날	9월 넷째 금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105	경로의 달	10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6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07	동물보호의 날	10.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108	세계 한인의날	10. 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09	세계한인주간	10.3.~10.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10	임산부의 날	10.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111	정신건강의 날	10.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12	정신건강주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13	여성어업인의날	10.10.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14	스포츠의 날 (前체육의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115	여성농업인의 날	10.1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
116	호스피스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17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118	회계의 날	10.31.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119	동반성장주간	11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0	임업인의 날	11. 1.	산림청	임업진흥법
121	손상예방의 날	11. 1.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2	수소의 날	11. 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3	한글 점자의 날	11. 4.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4	한글 점자 주간	한글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5	소상공인의 날	11.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6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의 날 이전1주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7	소방의 날	11. 9.	소방청	소방기본법
128	보행자의 날	11.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129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	11.11.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30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1	약의 날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132	아동학대예방의날	11.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3	아동학대예방주간	11.19.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4	김치의 날	11.22.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35	민원의 날	11.24.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6	중견기업주간	11월 셋째 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37	가정폭력추방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8	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139	여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40	자원봉사자의 날	12. 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1	자원봉사주간	12.5.부터 1주일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2	국가유산의 날	12. 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기본법
143	기부의날	12월 둘째 월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4	기부주간	12월 둘째 주간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5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12.23.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2

주요 국가 사례

□ 외국의 기념일

연번	국가	기념일명	날짜
1	 미국	나무의 날(National Arbor Day)	4월 마지막 금요일
2	 일본	식수제 / 녹색의 날 (Midori no Hi, Greenary Day)	4월 4일 / 5월 4일
3	 독일	나무의 날 (Tag des Baumes, Day of Tree)	4월 25일
4	 캐나다	단풍나무 날(Maple Leaf Day)	9월 마지막 수요일
5	 중국	식목절(National Arbor Day)	3월 12일*
		* 중국 근대 최초로 식수조림을 강조한 정치인 손중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서거 기념일인 3.12을 식수절로 정함(1979) * 국토가 광활해 지역의 기후조건이 상이 성과 시들이 현지여건에 따라 식수의 달, 식수의 주간, 식수의 날을 별도 운영	
6	 네덜란드	국가 나무 축제 (National Festival of Trees)	3월 세 번째 수요일

□ 식목주간 시행국가

- 일본 : 4월 ~ 5월
- 독일 : 4월 10일 ~ 4월 30일